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2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증여계약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3. 23. 접수 제19298호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나. 피고 B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접수 제10027호 마친 지분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32,820,9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820,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4310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D이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E빌딩 F호를, 월 50만원씩의 임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2. 28.부터 2016. 11. 말까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이 원고에 대하여 33개월의 사용기간에 대한 임료 1,650만 원과 2014. 5. ~ 2015.

12. 기간의 관리비 중 미지급액 중 1,949,987원 및 2016. 1. ~ 2016. 11. 기간의 관리비 7,535,0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9. 4. 11.경 'D은 원고에게 25,985,006원과 이 돈 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하고, 9,485,006원에 대하여는 2018. 10. 5.부터 2019. 4. 11.까지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43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2020. 7. 23.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처분행위

1) D은 2019. 2. 18.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공유지분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은 2019. 2. 21.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002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일부에 대한 이전 및 근저당권말소

1) 별지 목록 제2항에 기재된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12.경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1990. 12. 13.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3. 5.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 B은 2020. 3. 20.경 피고 C와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제1, 2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20. 3. 23.경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공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92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의 재산상태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2016. 11.말 현재 원고에 대하여 임료 및 미납관리비로 25,985,00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D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 전부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은 이와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수익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공유지분 중 이 사건 제1, 2공유지분에 대한 전득자인 피고 C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1)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의 목적물에 특정하여 그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로 취소가 제한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33,856,811원 = ① 원금 25,985,006원 + ② 16,500,000원에 대한 2016.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1. 10. 20.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32,328원 + ③ 9,485,006원에 대한 2018. 10. 5.부터 2019. 4. 11.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5,570원 + ④ 9,485,006원에 대한 2019. 4. 12.부터 2021. 10. 20.까지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593,907원

3)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시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2019. 2. 21. 당시 시가	2021. 6. 18. 당시 시가
이 사건 제1공유지분	43,032,000원	56,724,000원
이 사건 제2공유지분	9,397,980원	9,007,020원
이 사건 제3공유지분	110,745,000원	138,190,500원

4)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전체가 불가분인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제1공유지분에 대한 취소만으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책임재산이 확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제1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어느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인지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시가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가장 근접한 이 사건 제1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D 및 피고 B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용)는 피고 C 자신이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제소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이외에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제1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3. 23. 접수 제19298호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접수 제10027호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운

목 록

1. 강원도 원주시 대 652㎡
4분의 1지분(지분 전부 이전)
2. 강원도 원주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변색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88㎡
지하 9㎡
내역 변색벽돌조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보일러실
4분의 1지분(지분 전부 이전)
3. 강원도 원주시 답 1926㎡
4분의 1지분(지분 전부 이전)

